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04호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이유

○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 기조로 인한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의 단절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조례의 내용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여 조례의 존재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기류에 따라 창원시의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나.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함(안 부칙)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6
----------	-----

발의연월일 : 2023. 10. 13.

발 의 의 원 : 김영록 · 김우진 · 박강우 의원(3명)

찬 성 의 원 : 김미나 · 박승엽 · 서영권 · 손태화 · 안상우
최정훈 · 한상석 의원(7명)

1. 제안이유

-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 기조로 인한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의 단절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조례의 내용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여 조례의 존재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기류에 따라 창원시의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나.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함(안 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나.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